

1.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

법률 제5,409호 1997. 8. 30

주요 골자

- 가.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로 정산하는 제도를 폐지함(법 제 10조제1항).
-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담율을 현행 개발이익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13조).

개정 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그동안 구역내 행위제한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재산적 손실 등이 적지않음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도 개정하여 관련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